

# 구조감리로 가는 길 (구조기술사회의 발전방안)



김 치 윤 우리회 부회장  
(주)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전무이사

## 1. 구조감리에 대한 인식

2011년 구조감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회원은 구조감리의 도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구조엔지니어가 공사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법령의 개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의 배경으로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건축기술자들이 비전문가이며, 구조공학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과 공사용 설계도서의 불완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금년 3월에 발생한 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우리회 회원 상당수가 구조감리를 내진감리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감리든 CM업무참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조기술자의 현장참여를 건설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 2. 구조감리의 문제점과 방향

‘구조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존의 감리나 CM제도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들의 희망과 달리 현재의 감리나 CM제도가 갖는 모순이나 불합리성을 구조감리로 개선할 수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구조감리가 쉽게 성취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조감리 또는 내진감리라는 단어 자체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해석되어 기존의 감리나 CM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는 물론 건축사협회나 감리협회 등이 동의하지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조감리라는 용역방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회가 단계별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타 분야와 함께 현재의 용역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로부터 구조기술사와 구조감리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받고 있더라도 전반적인 환경이 여의치 않으므로 제도의 변화를 통한 확실한 참여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의 용역체계 내에서 구조기술사가 조금씩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관행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3. 구조감리의 단계별 목표

### 1) 구조기술자의 감리/CM 업무 참여 (단기적인 목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기술자가 감리나 CM용역에 일시적인 상주나 장기적인 비상주

형태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며, 이는 법령의 개정이 아닌 용역발주방법의 개선이나 관행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심의나 평가에 참여하는 회원과 특별회원(교수)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2) 구조분야의 독립적인 설계 (중기적인 목표)

현재의 감리용역형태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건축구조분야만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구조분야가 건축사 또는 설계사무소에 예속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구조기술자의 역할을 일반 건축기술자가 대행해 온 뿐 깊은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그것을 바꾸려니 힘들지만 구조감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구조설계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건설사업의 순서상으로도 설계단계 다음이 시공단계이고 감리나 CM은 시공단계의 용역이기 때문이다.

### 3) 구조분야의 독립적인 감리 (장기적인 목표)

궁극적으로 발주자가 기존의 책임감리나 CM을 선택하지 않고 전문분야로서 구조감리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조감리가 기존의 책임감리나 CM체계에 비하여 경제적이며 우수한 인재의 현장참여를 통하여 국가예산이 절감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듯이 건축법보다는 대다수의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을 우선대상으로 법령의 개선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민간영역에서 건축사와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 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을 위하여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길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 4. 감리와 CM 업계 현황

2011년 9월 현재 감리분야는 CM협회와 (사)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도하는 “CM(건설사업관리)”와 90년대 초 설립된 한국감리협회가 아래로 이끌어온 책임감리로 나눌 수 있다.

참여정부 기간 중에는 부동산의 활황 등으로 인하여 많은 건설사업이 진행되어 감리나 CM업계가 호황이었지만 2010년 이후 책임감리분야가 위축되고 CM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CM분야마저 불황의 늪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국토부에서 새로운 용역체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분야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특정의 대형감리회사들이 독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대형감리회사도 일반적인 책임감리분야에서 CM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 5. 구조감리의 관행화 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구조감리가 성취된다면 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구조감리와 유사한 형태로 구조기술사의 현장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리나 CM용역 발주단계에서 구조기술사(구조기술자포함)가 상주나 비상주 형태로 타 분야의 기술자들과 함께 배치되도록 요구하는 일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용역 발주에 필요한 입찰안내서나 PQ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회 회원들이나 교수님들이 대부분 설계심이나 평가에 참여해 왔는데, 그 일은 당연한 구조분야의 의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앞으로는 감리나 CM용역 발주단계에서 업체선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요구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용역발주 단계에서 구조기술사가 참여하는 회사에게 평가상의 이익을 주거나, 공사단계에서 구조기술자가 일정기간 동안 감리원으로 의무배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공자조차도 반길 일이므로 오히려 반대의 명분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다.

우리의 주장 속에는 구조체공사비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총공사비의 20% 내외이므로 구조분야의 전무가가 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이 매우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예산의 절감에 보탬이 된다는 명백한 경험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감리나 CM회사는 물론이고 시공자조차도 구조기술사를 활용하면 발주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 구조감리로 가는 길이며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비관리, VE, 설계변경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구조기술사가 공사 단계에 참여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